

# 『구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』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발 의 자 : 이지연 의원 외 5명

### 2. 제안이유

- 남북 간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화해 · 협력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, 우리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,
- 문화 · 체육 · 학술 · 농업 · 관광 등에 관한 인도주의적 사업 추진으로 평화와 통일의 공감대 형성 및 평화협력의 기반을 조성하여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발맞추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- ‘남북교류협력사업’에 대한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법인 ·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, 구성, 임기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안 제11조)

#### 4. 참고사항

##### ○ 관계법령

-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24조
- 「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8조

##### 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##### ○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19. 10. 2. ~ 10. 10.) 결과 의견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##### ○ 본 조례안은

- 정부와 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구미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임.

##### ○ 검토 결과,

- 평화와 상생, 화합의 남북관계를 구축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간 및 정부차원의 활발한 남북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며,
-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추진과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됨.

-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류의 폭을 넓히고 미래 통일 시대 이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시와 민간이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, 관계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다만,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정부의 대북관련 정책, 국제정세를 비롯한 남북의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기초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주도해 나가기 어려운 사업인 만큼,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질적 교류 협력이 가능한 범위 및 사업 추진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, 도내에서도 경상북도 포함 10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그 성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에 있음.

※ 도내 조례 제정 지자체 : 경상북도, 경주, 안동, 포항, 영덕, 울릉, 의성, 청송, 군위, 청도